

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0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3월 8일

발 의 자 : 박찬원 의원

찬 성 자 : 함명섭, 박종욱
장문혁, 이범연
임영순 의원

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7년 3월 14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임영순의원외 5인이 발의한 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및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「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등 3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 사 제 획

1. 활동목적

-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신속한 의사진행
-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
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2017년 3월 14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성

- 박찬원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, 이범연 의원
임영순 의원

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 용	비고
2017. 3.14 (화)	제1차 조례규칙 특위 (13:30)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.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.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	